

총리령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2호 중 “(주권은 제외한다)”를 “(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제3호를 “수익증권(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”로 하며, 제5호를 “파생결합증권(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3(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) 영 제66조의 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	제7조의3(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지분증권(주권은 제외한다)</u>	2. -----(<u>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</u>)
3. <u>수익증권</u>	3. <u>수익증권(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<u>파생결합증권</u>	5. <u>파생결합증권(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</u>
6. · 7. (생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52